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 시행일(2020년 3월 1일) 전 구입한 조건부 면세 승용차를 동 규정 시행기간(2020년 3월 1일~6월 30일) 내에 조건위반(용도변경, 양도 등)이 발생되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1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시행 기간(2020년 3월 1일 ~ 6월 30일) 이전에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 시행 기간(2020년 3월 1일 ~ 6월 30일) 중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규정 시행기간(2020년 3월 1일~6월 30일) 내에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후 시행기간(2020년 6월 30일까지) 경과 후에 조건위반(용도변경, 양도 등)이 발생되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개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대여사업용자동차가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즉 “장기대여 렌터카”)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최초 제조장 등에서의 반출시 세액을 전액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

례제한법 제109조의4 규정 시행기간(2020 3월 1일~6월 30일) 내에 조건부 면세로 구입이 된 렌터카가 장기렌터카에 해당되어 동 규정 시행기간(2020년 6월 30일까지) 이후에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는지 여부

■ 질의2, 3 답변

반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요건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액 면제받아 구입한 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입 당시의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

※ 자세한 계산 방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6.16.)’를 참고

○ 용도변경시 세액계산 방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적용시]

- 용도변경하여 징수하는 경우 반입시의 면제받은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 109조의4에 따른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06.16.)’ 유권해석을 응용]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취득가격 × 세율(5%) - 감면세액) ÷ 세율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세율(5%)